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종합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암환자사용약제 급여기준 용어정비 전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대병협 보험 제2014 -584(2014.12.1)

나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4214(2014.12.1)

2. 위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전부 개정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 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.

붙임 : 항암제 급여기준 전부개정 질의 응답

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이재신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86 (2014.12.02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js@kha.or.kr